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3월 23일

홍제제3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란	김 *란 1949 03 16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(홍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3-08
김 *란	서 *희 1985-01-01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(홍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3-08